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

위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1.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자
2. 서비스 이용기간
3. 서비스 제공조건
4. 서비스 등록번호
5. 서비스 이용 확인 연락처

년 월 일

통신판매중개(업)자명

직인